



제429회국회(임시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06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2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0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나. 제안이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Ⅱ.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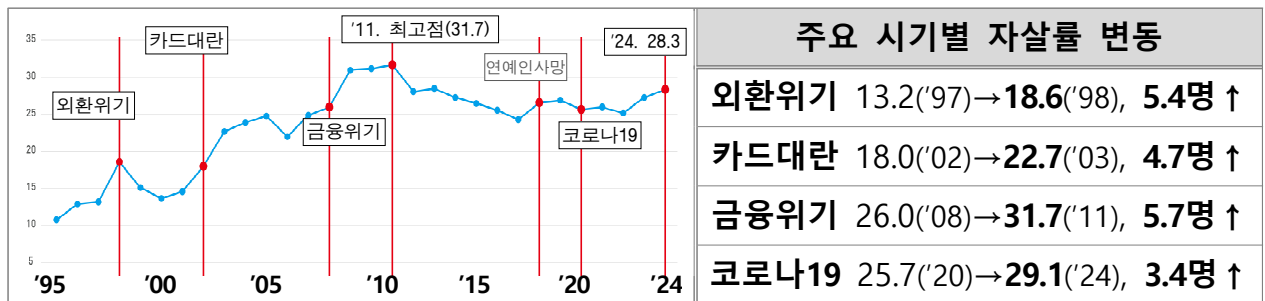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 ----- <u>대통령</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u>국무총리</u> 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u>대통령</u> 이-----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국무총리</u> 가 위촉하는 사람	2. ----- ----- <u>위원</u> <u>장</u> 이-----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우리나라는 2024년 자살사망자가 총 14,872명으로서 일 평균 40.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자살률¹⁾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자살률이 18.6명이었으나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인 2024년에는 자살률이 29.1명까지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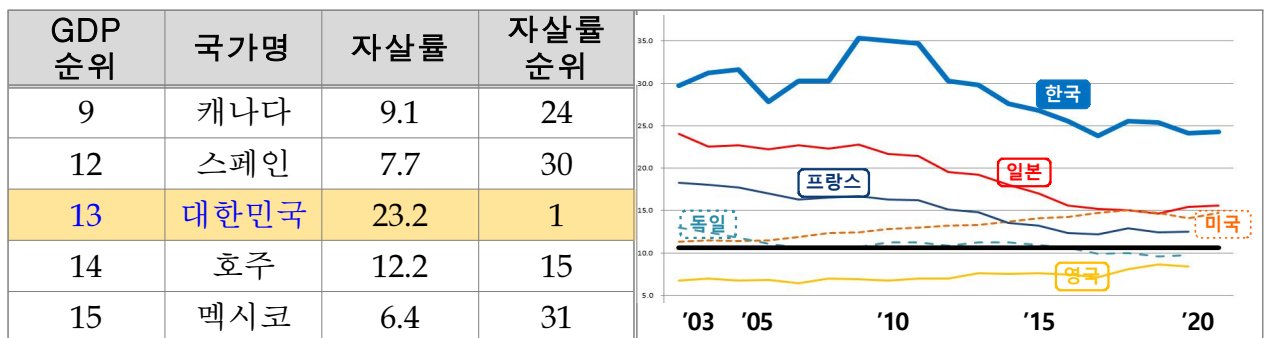
<연도별 자살률과 주요 시기별 자살률 변동>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과 비교해 보아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우리나라의 연령표준화 자살률²⁾은 23.2명으로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 OECD 회원국 평균(10.7명)과 대비하여도 2.2배 높음.

< 주요국 자살률 순위(左) 및 자살률 추이(右) >



*자료: 보건복지부, OECD.STAT, Health Status Data('25.7.추출)]

1)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말함.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OECD 기준 인구를 활용한 기준임.

□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이렇게 심각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³⁾,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 개최되었음.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안건 내용	일시	비고
제1차	① (보고) 위원회 중점 운영방향 및 향후 운영계획 (복지부) ② (보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복지부) ③ (보고) 「국가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통계청) ④ (심의) 자살위해물건 고시(안) (복지부)	'19.9	대면
제2차	① (보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복지부) ② (보고) 충청남도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충청남도) ③ (심의) '19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안)(복지부)	'20.5.	대면
제3차	① (보고)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복지부) ② (보고)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교육부,여가부)	'20.11.	대면
제4차	① (보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자살예방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② (보고)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인천광역시) ③ (심의) '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복지부)	'21.6.	대면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안전 내용	일시	비고
제5차	① (심의) '21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복지부) ② (심의)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안 수립 및 관리 강화계획(복지부)	'22.6	서면
제6차	① (심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② (보고)서울특별시 청년 자살예방대책(서울시) ③ (보고)민·관의 동행과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3.4	대면
제7차	① (심의) '22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23.6.	서면
제8차	① (보고) 최근 자살동향 및 대응 방안(관계부처 합동) ② (심의)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계획(복지부) ③ (심의) '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4.6.	대면
제9차	① (보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② (심의) '24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③ (심의) '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5.9.	대면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⁴⁾'에 따르면, 정부는 자살률을 2024년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를 목표로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노동 분야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교육부는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여성·가족 중심의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자살예방이 다양한 유관 부처의 유기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국가적 목표임을 보여주는 것임.

4) 2025.9.12. 작성

□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부처 간 협력 또는 조정 능력 향상이나 정책 추진력 강화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횟수가 연간 1회에 불과한데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은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대통령 소속으로서 자문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있는데, 대통령 소속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또는 민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거나 중앙부처의 장관이 맡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5) 「2025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행정안전부 발간) p. 7. 참고

<대통령 소속 주요 자문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근거 법률	위원장	목적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	대통령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 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 한 사항 심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 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 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 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 심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 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 의 조정 등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 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 항 심의 등
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법」 제11조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 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 한 중요 사항 심의

위원회명	근거 법률	위원장	목적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기획재정부장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 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대통령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 에 관한 사항을 심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0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 의·의결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현재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대응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의 격상은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 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 또는 점검하는 등 정부는 자살예방대 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하면서도 실효 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